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29호 2017. 7. 21(금)

규칙

○남원시 규칙 제612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훈령

○남원시 훈령 제380호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정 ----- 7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17-88호 남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고시 ----- 11

공고

○남원시 공고 제1005호 도로지정공고 ----- 37

○남원시 공고 제1018호 도로지정 변경공고 ----- 38

○남원시 공고 제1033호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21일

남원시 규칙 제 612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을 “사용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7일”을 “경우 7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하고자하는 사람은”을 “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불출수 및 지하누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를 “지하수 사용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중 불출수 및 지하수 누수가 확인된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을 “감면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8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9조 제4항 중 “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별지 제1,2,3,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필요한</u> ----- -----.</p>
<p>제2조(신고) ①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조례 제5조제1항제1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 신고(별지 제1호서식)</u> 2. <u>조례 제5조제1항제2호: 지하수 등의 사용 및 사용량 신고(별지 제2호서식)</u> 3. <u>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별지 제3호서식)</u> 4. <u>조례 제5조제1항제4호: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신고(별지 제4호서식)</u> <p>② <u>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반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제2조(신고) <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0px;"><u><삭 제></u></p>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과 배출량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중,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1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이 같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① -----

사용하려는 자는 -----

-----.

② -----

----- 경우 7일 -----

-----.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
----- 하
려는 자는 -----

-----.

-----.

② (생략)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점용허가 신청) ① (생략)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 ① 조례 제25조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출수 및 지하누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2.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과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

----- 받으려는 자
는 -----

----- 받아
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점용허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6조(감면) ① -----
-----.

1. 지하수 사용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중 불출수 및 지하수 누수가 확인된 사용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감면받으려는 자는 --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8조(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
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
의 신고가 있을 때

2. ~ 5. (생략)

제19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 받
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
식에 따라 환불 청구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자료제출 명령) -----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제19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받으려는 자는 -----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21일

남원시 훈령 제 380 호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2조 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도시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5조 제1항 중 “남원시 공무원”을 “시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남원시에서”를 “시에서”로 한다.
제8조 중 “두며, 자원봉사교류담당이”을 “두되, 간사는 대외협력담당이”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신 설></p> <p><u>이 규정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여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도시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u> 2. <u>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u> 3. <u>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u> <p>제5조(허가) ① 제2조에 따라 <u>남</u></p>	<p>제2조(적용범위) ① <u>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u> 2. <u>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u>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도시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u>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p>제5조(허가) ① ----- <u>시 공</u></p>

원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자원봉사교류담당이 된다.

제11조(심사절차) ① 간사는 신청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가 관계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사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무원-----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시에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
----- 두
-----, 간사는 대외협력담당이-----.

제11조(심사절차) ① -----

----- 따
----- 른 -----
-----.

② (현행과 같음)

남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남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결정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7월 21일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통1택지지구)	남원시 도통동 518번지 일원	99,579	-	99,579	도통1택지개발사업 (1985~1987) 건설부고시 제607호(1987.12.1)	-
기정	3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통2택지지구)	남원시 도통동 495-1번지 일원	66,467	-	66,467	도통2택지개발사업 (1985~1987) 건설부고시 제608호(1987.12.1)	-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9,579	-	99,579	100.0	
도통 1지구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0,076	-	80,076	80.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503	-	19,503	19.6	
합계			66,467	-	66,467	100.0	
도통 2지구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280	-	33,280	50.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3,187	-	33,187	49.9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도통 1지구	계	2개소			31,011 (8,177)	2,566 (693)			
기정	3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로 1-2호선변 (시청로)	16,911 (4,269)	1,391 (369)	12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기정	6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로 1-6호선변 (IC진입로)	14,100 (3,908)	1,175 (324)	12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도통 2지구	계	2개소			28,200 (7,077)	2,350 (593)			
기정	4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로 1-1호선변 (도통대로)	14,100 (3,601)	1,175 (304)	12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기정	6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로 1-6호선변 (IC진입로)	14,100 (3,476)	1,175 (289)	12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 면적 및 연장에서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면적임.

2)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도통 1지구	계	4개소				376,846 (93,275)		
기정	15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남원시청 일원	5층이하	116,770 (72,778)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기정	31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용성고 일원	8층이하	237,912 (4,430)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기정	39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도통동 509-1번지 일원	10층이하	9,231 (9,075)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기정	40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도통동 535-9번지일 원	10층이하	12,933 (6,992)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도통 2지구	계	2개소				267,412 (48,317)		
기정	27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고속버스 터미널 일원	8층이하	29,500 (26,511)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기정	31	고도 지구	최고 고도지구	용성고 일원	8층이하	237,912 (21,806)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 면적 및 연장에서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면적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가) 도로총괄표

구역명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도통 1지구	합계	31	6,724 (3,450)	136,208 (27,122)	5	3,441 (874)	108,310 (7,200)	4	930 (472)	12,214 (5,260)	22	2,353 (2,104)	15,684 (14,436)
	대로	2	2,956 (389)	103,460 (3,399)	2	2,956 (389)	103,460 (3,399)	-	-	-	-	-	-
	중로	2	943 (516)	13,362 (6,601)	-	-	-	1	682 (255)	10,230 (3,486)	1	261	3,132 (3,115)
	소로	27	2,825 (2,545)	19,386 (16,896)	3	485	4,850 (3,801)	3	248 (217)	1,984 (1,774)	21	2,092 (1,843)	12,552 (11,321)
도통 2지구	합계	16	7,365 (2,203)	219,781 (26,379)	4	6,189 (1,027)	212,289 (18,637)	1	108	865	11	1,068	6,627
	대로	2	5,951 (789)	208,285 (14,906)	2	5,951 (789)	208,285 (14,906)	-	-	-	-	-	-
	중로	1	160	3,200 (2,927)	1	160	3,200 (2,927)	-	-	-	-	-	-
	소로	13	1,254	8,296	1	78	804	1	108	865	11	1,068	6,627

※ 면적 및 연장에서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총면적은 각각부면적 포함된 면적임.(도통1지구 : 226m², 도통2지구 : 250m²)

나) 도통1지구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상태	주 경 과 지	최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938 (54)	대1-3 도통동 439-3도	대3-5 향교동 92답	일반 도로	시청	건설부고시 제520호 (1963.8.26)	
기정	대로	1	6	35	주간선 도로	2,018 (338)	2호광장 향교동 179-1도	5호광장 월락동 303도	일반 도로	지리산 주유소	건설부고시 제449호 (1981.12.12)	
기정	중로	2	8	15	집산 도로	682 (241)	대로1-2 도통동 546도	대로1-1 도통동 185-1도	일반 도로	시청 남측 경계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261	대로1-2 도통동 552도	소로2-49 도통동 546도	일반 도로	시청 북측 경계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1	7	10	집산 도로	99	대로1-6 향교동 545답	중로3-6 도통동 546도	일반 도로	시청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1	8	10	집산 도로	126	중로3-6 도통동 546도	중로2-8 도통동 546도	일반 도로	시청 북측 경계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1	9	10	집산 도로	260	중로1-14 도통동 408-2도	중로2-8 도통동 546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134	대로1-2 도통동 552도	소로1-9 도통동 548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324호 (1977.12.30)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39	대로1-6 도통동 544도	용성고 구역계 도통동545도	일반 도로	용성고 서측	건설부고시 제531호 (1985.12.3)	
기정	소로	2	73	8	국지 도로	75 (44)	소로1-9 도통동 548도	소로1-12 도통동 139-2도	일반 도로	시청 동남측	건설부고시 제531호 (1985.12.3)	
기정	소로	3	77	6	국지 도로	109 (21)	중로2-8 도통동 548도	소로2-49 도통동 255-2답	일반 도로	남원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52호 (1986.12.31)	
기정	소로	3	10 6	6	국지 도로	21	대로1-6 도통동 544도	소로3-108 도통동 545도	일반 도로	용성고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0 7	6	국지 도로	94	소로3-108 도통동 545도	소로3-110 도통동 545도	일반 도로	용성고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0 8	6	국지 도로	179	소로2-72 도통동 545도	소로3-110 도통동 545도	일반 도로	용성고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0 9	6	국지 도로	43	중로3-6 도통동 546도	소로3-110 도통동 545도	일반 도로	용성고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 연장에서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면적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상태	주 요 과 지	최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0	6	국지 도로	89	소로1-7 도통동 545도	소로3-107 도통동 508-6대	일반 도로	용성고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1 1	6	국지 도로	120	중로3-6 도통동 546도	소로1-7 도통동 545도	일반 도로	용성고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1 2	6	국지 도로	79	소로1-8 도통동 546도	소로3-113 도통동 546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1 3	6	국지 도로	143	중로3-6 도통동 546	소로1-8 도통동 546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1 4	6	국지 도로	105	소로1-8 도통동 546도	소로3-77 도통동 548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1 5	6	국지 도로	80	소로1-9 도통동 547도	소로3-118 도통동 548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1 6	6	국지 도로	68	소로1-9 도통동 547도	소로3-118 도통동 548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1 7	6	국지 도로	56	소로1-9 도통동 547도	소로3-118 도통동 548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1 8	6	국지 도로	154	중로2-8 도통동 548도	소로2-73 도통동 548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1 9	6	국지 도로	91	소로1-9 도통동 547도	소로3-123 도통동 547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2 0	6	국지 도로	91	소로1-9 도통동 547도	소로3-123 도통동 547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2 1	6	국지 도로	91	소로1-9 도통동 547도	소로3-123 도통동 547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2 2	6	국지 도로	91	소로1-9 도통동 547도	소로3-123 도통동 547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2 3	6	국지 도로	153	중로2-8 도통동 546도	소로2-46 도통동 548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2 4	6	국지 도로	39	대로1-2 도통동 552도	소로3-123 도통동 547도	일반 도로	시청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235호 (1985.12.29)	
기정	소로	3	13 8	6	국지 도로	196 (35)	소로3-107 도통동 545도	소로2-48 도통동 355-22도	일반 도로	용성고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59호 (1991.11.23)	

※ 연장에서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면적임.

다) 도통2지구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태	주경과 요치	최결 정할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3,933 (207)	용정동 구역계 용정동 760도	신촌동 구역계 신촌동 389천	일반 도로	고속 터미널	건설부고시 제520호 (1963.8.26)	
기정	대로	1	6	35	주간선 도로	2,018 (582)	2호광장 향교동 179-1도	5호광장 월락동 303도	일반 도로	지리산 주유소	건설부고시 제449호 (1981.12.12)	
기정	중로	1	3	20	보조 간선 도로	160	대로1-1 도통동 541도	도통동 495-4	일반 도로	고속 터미널 남측 경계	남원시고시 제2001-30호 (2001.5.15)	
기정	소로	1	44	10	국지 도로	78	중로1-3 도통동 541도	소로2-74 도통동 540도	일반 도로	고속 터미널	전라북도고시 제2013-18호 (2013.01.25.)	
기정	소로	2	74	8	국지 도로	108	대로1-1 도통동 541도	택지개발 지구계 도통동 540도	일반 도로	고속 터미널 서측 경계	건설부고시 제531호 (1985.12.3)	
기정	소로	3	12 5	6	국지 도로	241	대로1-6 도통동 542도	소로3-134 도통동 543도	일반 도로	용성중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41호 (1985.12.28)	
기정	소로	3	12 6	6	국지 도로	198	소로3-125 도통동 543도	소로3-129 도통동 543도	일반 도로	용성중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41호 (1985.12.28)	
기정	소로	3	12 7	6	국지 도로	33	대로1-6 도통동 542도	소로3-126 도통동 543도	일반 도로	용성중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41호 (1985.12.28)	
기정	소로	3	12 8	6	국지 도로	31	소로3-126 도통동 543도	소로3-125 도통동 543도	일반 도로	용성중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41호 (1985.12.28)	
기정	소로	3	12 9	6	국지 도로	23	대로1-6 도통동 542도	소로3-134 도통동 543도	일반 도로	용성중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41호 (1985.12.28)	
기정	소로	3	13 0	6	국지 도로	50	대로1-1 도통동 541도	소로3-134 도통동 543도	일반 도로	용성중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41호 (1985.12.28)	
기정	소로	3	13 1	6	국지 도로	102	대로1-6 도통동 542도	소로2-74 도통동 540도	일반 도로	고속 터미널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41호 (1985.12.28)	
기정	소로	3	13 2	6	국지 도로	61	소로3-133 도통동 540도	소로3-131 도통동 540도	일반 도로	고속 터미널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41호 (1985.12.28)	
기정	소로	3	13 3	6	국지 도로	101	대로1-6 도통동 542도	소로2-74 도통동 540도	일반 도로	고속 터미널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41호 (1985.12.28)	
기정	소로	3	13 4	6	국지 도로	124	대로1-1 도통동 541도	소로3-129 도통동 543도	일반 도로	용성중 북측	전라북도고시 제241호 (1985.12.28)	
기정	소로	3	20 6	6	국지 도로	103	중로1-3 도통동 541도	소로2-74 도통동 540도	일반 도로	경관녹 지 서측	전라북도고시 제2013-18호 (2013.01.25.)	

※ 연장에서 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자동차정류장

가)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통 2지구	변경	1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 차 터미널 (고속버스)	도통동 495-1번 지	3,511	-	3,511	전라북도고시 제2013-18호 (2013.01.25.)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3,172	-	3,172		
도통 1지구	기정	1	도통1호 공원(1호)	어린이 공원	도통동 510-4번 지	1,577	-	1,577	전라북도고시 제2013-18호 (2013.01.25.)	
	기정	2	도통2호 공원(2호)	어린이 공원	도통동 521번지	1,595	-	1,595	전라북도고시 제2013-18호 (2013.01.25.)	
도통 2지구	기정	3	도통3호 공원(3호)	어린이 공원	도통동 502번지	2,605	-	2,605	전라북도고시 제2013-18호 (2013.01.25.)	

2)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통 2지구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도통동 495-3번 지	3,432	-	3,432	전라북도고시 제2013-18호 (2013.01.25.)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통 1지구	기정	6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남원시청)	도통동 518번지	16,689	-	16,689	전라북도고시 제2013-18호 (2013.01.25.)	남원 시청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주거용지

1) 도통1지구 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주거1	R1	2,102.7	1	도통동 530-12 일원	173.6	
			2	도통동 530-11 일원	181.1	
			3	도통동 530-10 일원	179.3	
			4	도통동 530-9 일원	174.4	
			5	도통동 530-8 일원	168.5	
			6	도통동 530-7 일원	174.8	
			7	도통동 530-2 일원	354.2	
			8	도통동 530-3 일원	179.2	
			9	도통동 530-4 일원	174.4	
			10	도통동 530-5 일원	168.8	
			11	도통동 530-6 일원	174.4	
	R2	2,110.8	1	도통동 531-12 일원	171.9	
			2	도통동 531-11 일원	177.8	
			3	도통동 531-10 일원	177.8	
			4	도통동 531-9 일원	177.7	
			5	도통동 531-8 일원	177.6	
			6	도통동 531-7 일원	172.3	
			7	도통동 531-1 일원	172.7	
			8	도통동 531-2 일원	177.6	
			9	도통동 531-3 일원	177.7	
			10	도통동 531-4 일원	177.6	
			11	도통동 531-5 일원	177.6	
			12	도통동 531-6 일원	172.5	
	R3	2,286.4	1	도통동 532-12 일원	186.2	
			2	도통동 532-11 일원	192.7	
			3	도통동 532-10 일원	192.7	
			4	도통동 532-9 일원	192.7	
			5	도통동 532-8 일원	192.6	
			6	도통동 532-7 일원	188.2	
			7	도통동 532-1 일원	188.5	
			8	도통동 532-2 일원	191.3	
			9	도통동 532-3 일원	191.4	
			10	도통동 532-4 일원	191.6	
			11	도통동 532-5 일원	191.5	
			12	도통동 532-6 일원	187.0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주거1	R4	2,287.3	1	도통동 533-12 일원	188.7	
			2	도통동 533-11 일원	191.9	
			3	도통동 533-10 일원	191.9	
			4	도통동 533-9 일원	191.9	
			5	도통동 533-8 일원	191.9	
			6	도통동 533-7 일원	188.0	
			7	도통동 533-1 일원	188.6	
			8	도통동 533-2 일원	191.7	
			9	도통동 533-3 일원	191.7	
			10	도통동 533-4 일원	191.7	
			11	도통동 533-5 일원	191.6	
			12	도통동 533-6 일원	187.7	
	R5	2,289.6	1	도통동 534-12 일원	189.7	
			2	도통동 534-11 일원	195.6	
			3	도통동 534-10 일원	195.2	
			4	도통동 534-9 일원	194.8	
			5	도통동 534-8 일원	194.5	
			6	도통동 534-7 일원	187.2	
			7	도통동 534-1 일원	184.1	
			8	도통동 534-2 일원	190.0	
			9	도통동 534-3 일원	190.4	
			10	도통동 534-4 일원	191.0	
			11	도통동 534-5 일원	191.5	
			12	도통동 534-6 일원	185.6	
	R6	2,309.0	1	도통동 522-9 일원	191.0	
			2	도통동 522-10 일원	189.5	
			3	도통동 522-11 일원	191.9	
			4	도통동 522-1 일원	189.7	
			5	도통동 522-8 일원	299.6	
			6	도통동 522-2 일원	301.9	
			7	도통동 522-3 일원	190.8	
			8	도통동 522-7 일원	198.5	
			9	도통동 522-6 일원	176.7	
			10	도통동 522-5 일원	189.8	
			11	도통동 522-4 일원	189.6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주거1	R7	1,874.6	1	도통동 520-9 일원	192.0	
			2	도통동 520-8 일원	198.8	
			3	도통동 520-7 일원	198.8	
			4	도통동 520-6 일원	198.9	
			5	도통동 520-1 일원	192.5	
			6	도통동 520-2 일원	198.9	
			7	도통동 520-3 일원	198.9	
			8	도통동 520-4 일원	199.0	
			9	도통동 520-5 일원	296.8	
	R8	2,151.9	1	도통동 519-10 일원	201.8	
			2	도통동 519-9 일원	207.8	
			3	도통동 519-8 일원	207.7	
			4	도통동 519-7 일원	207.7	
			5	도통동 519-6 일원	225.0	
			6	도통동 519-1 일원	200.6	
			7	도통동 519-2 일원	208.0	
			8	도통동 519-3 일원	208.0	
			9	도통동 519-4 일원	207.8	
			10	도통동 519-5 일원	277.5	
소 계		17,412.3				
주거2	R9	2,650.9	1	도통동 517-12 일원	211.1	
			2	도통동 517-11 일원	219.5	
			3	도통동 517-14 일원	105.9	
			4	도통동 517-10 일원	113.7	
			5	도통동 517-9 일원	219.7	
			6	도통동 517-8 일원	219.6	
			7	도통동 517-7 일원	233.3	
			8	도통동 517-1 일원	213.4	
			9	도통동 517-2 일원	219.5	
			10	도통동 517-3 일원	219.5	
			11	도통동 517-4 일원	219.6	
			12	도통동 517-5 일원	219.7	
			13	도통동 517-6 일원	236.4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주거2	R10	2,124.6	1	도통동 516-10 일원	199.9	
			2	도통동 516-9 일원	207.0	
			3	도통동 516-8 일원	207.4	
			4	도통동 516-7 일원	207.9	
			5	도통동 516-6 일원	295.5	
			6	도통동 516-1 일원	203.6	
			7	도통동 516-2 일원	209.5	
			8	도통동 516-3 일원	208.9	
			9	도통동 516-4 일원	208.3	
			10	도통동 516-5 일원	176.6	
	R11	2,035.6	1	도통동 515-10 일원	198.3	
			2	도통동 515-9 일원	211.6	
			3	도통동 515-8 일원	211.7	
			4	도통동 515-7 일원	214.1	
			5	도통동 515-6 일원	182.9	
			6	도통동 515-1 일원	200.2	
			7	도통동 515-2 일원	208.8	
			8	도통동 515-3 일원	208.6	
			9	도통동 515-4 일원	209.2	
			10	도통동 515-5 일원	190.2	
	R12	2,113.4	1	도통동 514-10 일원	204.6	
			2	도통동 514-9 일원	210.3	
			3	도통동 514-8 일원	210.5	
			4	도통동 514-7 일원	210.2	
			5	도통동 514-6 일원	219.6	
			6	도통동 514-1 일원	207.3	
			7	도통동 514-2 일원	212.5	
			8	도통동 514-3 일원	212.9	
			9	도통동 514-4 일원	213.0	
			10	도통동 514-5 일원	212.5	
	R13	843.7	1	도통동 513-3 일원	278.9	
			2	도통동 513-2 일원	220.8	
			3	도통동 513-1 일원	344.0	
소 계		9,768.2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주거3	R14	1,391.3	1	도통동 511-5 일원	229.5	
			2	도통동 511-6 일원	236.1	
			3	도통동 511-1 일원	230.0	
			4	도통동 511-4 일원	229.7	
			5	도통동 511-3 일원	236.0	
			6	도통동 511-2 일원	230.0	
	R15	1,783.4	1	도통동 512-5 일원	171.0	
			2	도통동 512-6 일원	178.3	
			3	도통동 512-7 일원	178.4	
			4	도통동 512-8 일원	249.1	
			5	도통동 512-4 일원	226.1	
			6	도통동 512-3 일원	345.4	
			7	도통동 512-1 일원	220.1	
			8	도통동 512-2 일원	215.0	
	R16	3,211.6	1	도통동 508-10 일원	200.8	
			2	도통동 508-9 일원	206.7	
			3	도통동 508-8 일원	206.9	
			4	도통동 508-7 일원	246.0	
			5	도통동 508-6 일원	216.7	
			6	도통동 508-11 일원	200.6	
			7	도통동 508-12 일원	206.6	
			8	도통동 508-13 일원	219.6	
			9	도통동 508-14 일원	225.7	
			10	도통동 508-5 일원	286.7	
			11	도통동 508-4 일원	252.2	
			12	도통동 508-3 일원	250.3	
			13	도통동 508-2 일원	249.7	
			14	도통동 508-1 일원	243.1	
	R17	2,866.0	1	도통동 507-7 일원	238.2	
			2	도통동 507-8 일원	234.5	
			3	도통동 507-9 일원	235.6	
			4	도통동 507-10 일원	234.4	
			5	도통동 507-11 일원	206.4	
			6	도통동 507-1 일원	216.7	
7			도통동 507-6 일원	235.2		
8			도통동 507-5 일원	259.5		
9			도통동 507-4 일원	283.2		
10			도통동 507-3 일원	221.7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주거3	R17	2,866.0	11	도통동 507-2 일원	229.1	
			12	도통동 506-8 일원	271.5	
	R18	1,541.1	1	도통동 505-5 일원	276.2	
			2	도통동 505-7 일원	141.0	
			3	도통동 505-4 일원	282.0	
			4	도통동 505-6 일원	282.4	
			5	도통동 505-2 일원	282.7	
			6	도통동 505-1 일원	276.8	
			R19	1,531.9	1	도통동 506-5 일원
	2	도통동 506-6 일원			249.9	
	3	도통동 506-4 일원			351.1	
	4	도통동 506-3 일원			284.5	
	5	도통동 506-2 일원			254.4	
	6	도통동 506-1 일원			182.2	
	R20	730.7	1	도통동 504-1 일원	261.9	
			2	도통동 504-2 일원	222.3	
			3	도통동 504-3 일원	246.5	
	소 계		13,056.0			
	계		40,236.5			

2) 도통2지구 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주거4	R21	1,303.2	1	도통동 503-1 일원	325.5	
			2	도통동 503-2 일원	278.3	
			3	도통동 503-3 일원	351.4	
			4	도통동 503-4 일원	348.0	
	R22	3,456.8	1	도통동 501-1 일원	248.7	
			2	도통동 501-2 일원	257.5	
			3	도통동 501-3 일원	265.0	
			4	도통동 501-4 일원	267.2	
			5	도통동 501-5 일원	263.8	
			6	도통동 501-6 일원	255.9	
			7	도통동 501-7 일원	242.2	
			8	도통동 501-14 일원	236.3	
			9	도통동 501-13 일원	241.4	
			10	도통동 501-12 일원	239.9	
			11	도통동 501-11 일원	238.4	
			12	도통동 501-10 일원	236.9	
			13	도통동 501-9 일원	235.5	
			14	도통동 501-8 일원	228.1	
	R23	2,733.9	1	도통동 500-1 일원	190.7	
			2	도통동 500-2 일원	186.0	
			3	도통동 500-3 일원	187.1	
			4	도통동 500-4 일원	223.2	
			5	도통동 500-5 일원	185.5	
			6	도통동 500-6 일원	200.0	
			7	도통동 500-7 일원	172.8	
			8	도통동 500-14 일원	192.3	
			9	도통동 500-13 일원	193.5	
			10	도통동 500-12 일원	189.1	
			11	도통동 500-11 일원	200.1	
			12	도통동 500-10 일원	203.9	
			13	도통동 500-9 일원	231.9	
			14	도통동 500-8 일원	177.8	
	R24	2,205.7	1	도통동 499-1 일원	182.1	
			2	도통동 499-2 일원	181.7	
			3	도통동 499-3 일원	182.3	
			4	도통동 499-4 일원	185.3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주거4	R24	2,205.7	5	도통동 499-5 일원	187.9	
			6	도통동 499-6 일원	205.6	
			7	도통동 499-12 일원	181.9	
			8	도통동 499-11 일원	182.0	
			9	도통동 499-10 일원	182.1	
			10	도통동 499-9 일원	182.7	
			11	도통동 499-8 일원	180.7	
			12	도통동 499-7 일원	171.4	
	R25	2,958.1	1	도통동 497-9 일원	248.3	
			2	도통동 497-10 일원	219.1	
			3	도통동 497-11 일원	223.8	
			4	도통동 497-1 일원	238.8	
			5	도통동 497-8 일원	258.7	
			6	도통동 497-6 일원	294.2	
			7	도통동 497-12 일원	293.3	
			8	도통동 497-2 일원	246.6	
			9	도통동 497-7 일원	248.8	
			10	도통동 497-5 일원	235.6	
			11	도통동 497-4 일원	231.8	
			12	도통동 497-3 일원	219.1	
	R26	2,199.7	1	도통동 498-8 일원	221.5	
			2	도통동 498-9 일원	205.2	
			3	도통동 498-10 일원	233.7	
			4	도통동 498-1 일원	187.0	
			5	도통동 498-2 일원	350.3	
			6	도통동 498-3 일원	196.8	
			7	도통동 498-7 일원	215.4	
			8	도통동 498-6 일원	195.5	
			9	도통동 498-5 일원	197.8	
			10	도통동 498-4 일원	196.5	
	소 계		14,857.4			
	계		14,857.4			

나. 상업용지

1) 도통1지구 상업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상업1	C1	2,275.7	1	도통동 536-5 일원	473.0	
			2	도통동 536-6 일원	473.3	
			3	도통동 536-1 일원	473.8	
			4	도통동 536-4 일원	283.8	
			5	도통동 536-3 일원	289.1	
			6	도통동 536-2 일원	282.7	
	C2	3,323.9	1	도통동 535-7 일원	492.7	
			2	도통동 535-8 일원	469.7	
			3	도통동 535-9 일원	512.9	
			4	도통동 535-1 일원	512.8	
			5	도통동 535-6 일원	263.0	
			6	도통동 535-5 일원	269.5	
			7	도통동 535-4 일원	269.6	
			8	도통동 535-3 일원	269.9	
상업2	C3	1,422.7	1	도통동 510-1 일원	343.7	
			2	도통동 510-6 일원	242.5	
			3	도통동 510-5 일원	261.1	
			4	도통동 510-2 일원	258.3	
			5	도통동 510-3 일원	317.1	
	C4	5,337.9	1	도통동 509-12 일원	1,141.8	
			2	도통동 509-1 일원	1,131.2	
			3	도통동 509-11 일원	339.8	
			4	도통동 509-10 일원	300.8	
			5	도통동 509-9 일원	297.9	
			6	도통동 509-8 일원	299.8	
			7	도통동 509-7 일원	278.4	
			8	도통동 509-2 일원	280.9	
			9	도통동 509-3 일원	288.4	
			10	도통동 509-4 일원	300.6	
			11	도통동 509-5 일원	330.0	
			12	도통동 509-6 일원	348.3	
			소 계		12,360.2	
계		12,360.2				

2) 도통2지구 상업용지 :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상업3	C5	4,981.9	1	도통동 496-7 일원	540.1		
			2	도통동 496-8 일원	475.1		
			3	도통동 496-9 일원	475.1		
			4	도통동 496-10 일원	475.3		
			5	도통동 496-1 일원	491.4		
			6	도통동 496-6 일원	479.0		
			7	도통동 496-5 일원	500.2		
			8	도통동 496-4 일원	500.0		
			9	도통동 496-3 일원	499.8		
			10	도통동 496-2 일원	545.9		
	C6	3,542.9	1	도통동 493 일원	3,542.9		
	C7	2,247.1	1	도통동 494-5 일원	368.7		
			2	도통동 494-6 일원	375.7		
			3	도통동 494-1 일원	368.7		
			4	도통동 494-4 일원	372.4		
			5	도통동 494-3 일원	382.8		
			6	도통동 494-2 일원	378.8		
	C8	4,351.0	1	도통동 495-1일원	549.0		
			2	도통동 495-1일원	621.6		
			3	도통동 495-1일원	664.5		
			4	도통동 495-1일원	522.7		
			기정	5	도통동 495-1일원	955.5	
			변경	5	도통동 495-7일원	1,023.3	
			기정	6	도통동 495-1일원	522.7	
			변경	6	도통동 495-7일원	478.0	
	기정	7	도통동 495-1일원	515.0			
	변경	7	도통동 495-7일원	491.9			
	소 계		15,122.9				
	계		15,122.9				

■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변경 내용	변경사유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상업 3	C8	5	도통동 495-7일원	○ 획지면적 감소 - 당초 955.5㎡ → 1,023.3㎡ (감 67.8㎡)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심부 유희지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도시적 경관 형성과 발전을 유도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에 따른 택지 조성을 위한 적정 획지의 공급을 위하여 획지의 일부변경 조정	
		6	도통동 495-7일원	○ 획지면적 감소 - 당초 522.7㎡ → 478.0㎡ (감 44.7㎡)		
		7	도통동 495-7일원	○ 획지면적 감소 - 당초 515.0㎡ → 491.9㎡ (감 23.1㎡)		

다. 공공청사

1) 공공청사(남원시청)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청사1	G1	16,689.4	1	도통동 518 일원	16,689.4	
소 계		16,689.4				
계		16,689.4				

라. 자동차정류장

1) 자동차정류장(남원고속터미널)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정류장1	B1	3,510.8	1	도통동 495-1일원	3,510.8	
소 계		3,510.8				
계		3,510.8				

마. 주차장

1) 주차장 : 금회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주차장1	P1	559.7	559.3	1	도통동 495-7일원	559.7	559.3	위치 및 구적오 차에 의한 면 적 변경
소 계		559.7	559.3					
계		5593. 7	559.3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표시 번호	가구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1	P1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위치변경 및 면적 감소 - 면적 : 559.7m² → 559.3m² (감) 0.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 후 지적분할에 의한 구적오차 정정 및 주택지조성을 위한 획지 변경에 따른 동일필지(1필지) 내 위치변경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R1~R26	도통동 512-3 일원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남원시도시계획조례 별표5(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겸용 단독주택은 건축물 연면적 중 50%이상은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하고 그 외는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이용한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정화구역 외 지역은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안의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지 내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은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 1층 바닥높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개별 주택으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건축물 정면의 바닥높이는 보도 등과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 지붕 및 옥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지 건축물에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시 평지붕은 전체 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단, 이면가로에 입지한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설치한다.) -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권장한다. -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이어서는 안된다. - 부득이하게 평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담장, 대문,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 - 미관보호를 위한 차폐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담장의 설치가 가능하다. - 담장의 형태와 재질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부식되는 소재, 채도가 높은 색상의 메쉬웬스, 시멘트벽돌, 슈퍼그래픽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 색상 - YR/Y, 명도 : 8~10, 채도 : 2이하 ◦ 보조색 : 색상 - YR/Y, 명도 : 6~8, 채도 : 4이하 ◦ 강조색 : 색상 - YR, 명도 : 3~7, 채도 : 3이하 ◦ 지붕색 : 색상 - 5.0YR~5.0Y, 명도 : 6이하, 채도 : 4이하 				

나. 상업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C1~C8	도통동 509-1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남원시도시계획조례 별표9(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의거한 허용용도 - 단, 미관지구에 대하여는 남원시도시계획조례 43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서 제한한 건축물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정화구역 외 지역은 제외)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안의 공지 - 상업용지 내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가 단절된 폐쇄적 경관을 지양하고, 주변과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벽면 설치를 권장한다. - 셔터의 사용은 지양하며 필요한 경우 투시형 셔터로 처리할 수 있다. - 차양막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입면과 조화를 고려한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적용하고, 동일 건물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보행공간이 부족한 경우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다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색상 - R/YR/Y, 명도 : 6~10, 채도 : 3이하 ◦보조색 : 색상 - R/YR/Y, 명도 : 6~9, 채도 : 4이하 ◦강조색 : 색상 - R/YR/Y 명도 : 3~7, 채도 : 5이하 ◦지붕색 : 색상 - 5.0YR~5.0Y, 명도 : 6이하, 채도 : 4이하 		

다. 공공청사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G1	도통동 518 일 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남원시청)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안의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 내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 - 미관보호를 위한 차폐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담장의 설치가 가능하다. - 담장의 형태와 재질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부식되는 소재, 채도가 높은 색상의 메쉬웬스, 시멘트벽돌, 슈퍼그래픽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 : 색상 - YR~Y, 명도 : 8~10, 채도 : 2이하 ◦보조색 : 색상 - YR~Y, 명도 : 6~8.5, 채도 : 4이하 ◦강조색 : 색상 - YR~Y, 명도 : 4~7, 채도 : 3.5이하 ◦지붕색 : 색상 - YR~Y, 명도 : 6이하, 채도 : 4이하 				

라.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B1	도통동 495-1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버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안의 공지 - 자동차정류장 내 건축물은 남원시 건축조례 제31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 - 미관보호를 위한 차폐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담장의 설치가 가능하다. - 담장의 형태와 재질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부식되는 소재, 채도가 높은 색상의 메쉬웬스, 시멘트벽돌, 슈퍼그래픽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 색상 - R/YR/Y, 명도 : 6~10, 채도 : 3이하 ◦ 보조색 : 색상 - R/YR/Y, 명도 : 6~9, 채도 : 4이하 ◦ 강조색 : 색상 - R/YR/Y 명도 : 3~7, 채도 : 5이하 ◦ 지붕색 : 색상 - 5.0YR~5.0Y, 명도 : 6이하, 채도 : 4이하 				

마. 주차장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P1	도통동 495-7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타 공작물 및 부속용도는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표현한다. - 미관보호를 위한 차폐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담장의 설치가 가능하다. - 담장의 형태와 재질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부식되는 소재, 채도가 높은 색상의 메쉬웬스, 시멘트벽돌, 슈퍼그래픽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 		
		색채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변경없음

구 분		설 치 기 준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원시의 고유이미지와 지구적 특성이 반영된 매력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규격, 수량, 종류 등에 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도시 조성 ◦옥외광고물은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주변요소와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치
일반적 기준	설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위치를 결정하여 간판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가로형 광고물의 경우,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설치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계획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설치 틀) 설치
	설치 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제한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은 수량에서 제외 ◦세로형 광고물, 옥상간판의 설치를 금하며, 현수막 등은 지침의 사항을 준수
	형태 및 비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조로운 판류형 광고물은 금지하고, 입체형 간판만을 권장하여 다양한 모양의 광고물을 디자인하고 획일화 극복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불필요한 형태를 배제하고 간결한 형태로 집중될 수 있도록 조성 ◦업종의 성격과 영업형태에 따라 특성과 이미지를 고려한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친근감 있는 거리를 연출 ◦간결한 형태로 상호와 내용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성 ◦인접광고물의 높이나 폭 비례를 일치시키고 인접광고물과의 서체크기가 과도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조성
	소재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건축물 내의 광고물은 이질적인 이미지의 색채사용 지양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색채를 사용하되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시킬 부분에 포인트색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성 ◦간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외장재의 색채와 건축물의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조성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 재질 및 저질자재 사용 금지
	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체는 지침에서 제시된 서체 사용을 권장하며, 다른 서체 사용 시 상점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서체를 사용하되 가독성과 조화미를 고려하여 적용 ◦가로의 통일성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서체의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의 1/2이내로 제한 ◦서체색은 건물외관 및 광고물 바탕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표시 및 자극적인 조명방식은 지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간판의 휘도(광원의 밝기)는 눈부심을 최소화 ◦시각적으로 편안한 조명을 형성할 수 있는 조명방식을 적극 권장

구 분		설 치 기 준
유형별 표시기준	가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업소당 1간판으로 꼭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가능 ◦파나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구별하여 표시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 가로크기는 해당업소 가로폭 이내로 하며, 세로크기는 창문간 세로폭의 80%이하 또는 1.2m 중 작은 것으로 선택하여 설치 ◦입체문자형의 세로크기는 50cm 이내로 하며, 1층을 기준으로 한 층 높아질 때마다 5cm까지 커질 수 있으나 최대 70cm 이내로 제한
	건물상단 가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주가 건물 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건물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한 것이며 업소가 표시할 경우 총수량(업소당 2개 간판)에 포함 ◦서체는 입체형만 가능하며 서체의 크기는 건물 상단 가로 폭의 1/2 이내, 가로 및 세로폭 1m까지 가능
	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 ◦한 건물에 사용된 차양막의 규격은 통일
	돌출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 총수량에 포함되며 한 업소당 1개까지 설치 가능 ◦단층 건축물은 행거형으로 설치하며 돌출폭은 30cm 이내로 한다. ◦2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듈화 된 박스 형태로 균일크기의 일정 규격으로 통일되도록 설치하며 지침의 사항을 준수 ◦지면으로부터 3m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이상)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건물벽면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연립형의 경우 건물의 동일 위치에 한 줄로 표시하되, 건물 전면 폭이 20m 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 가능 ◦문자나 도형부분에 대한 부분조명을 권장
	지주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나, 가로형 간판 적용이 힘든 건축물이거나 시청로, 충정로, 춘향로에 면한 4층 이상의 건축물 중 건축선을 후퇴한 건축물에 한하여 주출입구 부분에 1개의 연립지주 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돌출간판의 설치 금지 ◦일정한 규격의 교체가 가능한 게시판을 사용하며 구조체는 무채색이나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 융화될 수 있도록 조성 ◦지주이용간판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3m이내로 하되, 1면의 면적은 2㎡ 이내로 제한 ◦지주이용간판은 보도경계선으로 부터 50c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경계선으로 부터 100cm이상)의 거리를 확보 ◦지주이용간판은 주변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설치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우선하여 설치하며 표시부분의 배경색은 한 가지로 통일 ◦지면과 접합부의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 ◦문자나 도형부분에 대한 부분조명을 권장

◎ 남원시 공고 제 2017 - 1005 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21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7-1 3	남원시 화정동 산43-6(임)	김*상	2017-건축과- 신축신고-281	60	7~9	470	남 원 시 화 정 동 산 43-1	470	임*순, 박*순

◎ 남원시 공고 제 2017 - 1018 호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21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6-6	남원시 식정동 54-9, 54-11	김*길	2016-건축과- 신축신고-116	186	5~6	1,127	남원시 식정동 54-15, 54-29, 54-12	남원시 식정동 54-15, 54-29, 54-12, 54-8	지번 추가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07. 21

남 원 시 장

1. 공고내용 :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413조, 제414조, 제741조, 750조
의료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7. 07. 21. ~ 2017. 08. 05(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대 상 자	주 소	부당이득금(원)	반송사유	비고
대한복지***** 생활협동조합	전북 남원시 남문로 4*5	29,833,500	이사감	대표자 최*식
비전****협동조합	전북 남원시 용성로 9*-1	23,285,340	수취인불명	대표자 이*균

5. 송달내용

○ 위 처분 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08. 0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사항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 063-620-682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